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4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0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춘선,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3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편의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 또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5조의4(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편의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 또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4
 - 공동주택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관련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의4 (공동주택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편의 지원)	△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5조의4(공동주택¹⁾ 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편의 지원)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용편의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자료)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추진 내용 * 출처 : 2024년도 서울시 예산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공동주택관리실태 및 모범단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내용 :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간 배려·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보조금 지원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²⁾ 대상 공동주택 단지	1,300,00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가목에서 다목의 주택을 의미

구분	세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조에 따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 아 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과, 4개층이하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4개층이하 주택

2)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23년 12월말 기준)

구분	단지수	동수	세대수	세대별 단지수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현황> '23년12월말 기준			
				3,000 세대이상	2,000 세대이상	1,000 세대이상	500 세대이상	300 세대이상	300 세대미만	유형	단지수	동수	세대수
합 계	2,308	17,078	1,433,168	33	57	261	558	547	852	합 계	4,275	21,448	1,747,284
아 파트	2,134	16,635	1,379,832	33	57	258	546	511	729	아 파트	3,627	19,660	1,650,369
주상복합	167	341	51,036	0	0	3	11	34	119	주상복합	346	543	74,695
연 립	7	102	2,300	0	0	0	1	2	4	연 립	282	1,161	20,992
										다 세 대	20	84	1,22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 ①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③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023년 승강기 보유현황(용도별)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통계

구분	합계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 장	기 타
서울시	166,675	83,333	30,372	7,794	5,002	18,994	2,826	8,072	1,786	2,298	2,788	3,410

(붙임) 2024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사업내용 : 관리노동자와 입주자가 함께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보조금 지원
 -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장비 및 물품 구매, 구성원간 소통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선정단지 : 100개단지 (붙임 참조)
- 예산('24년) : 1,300백만원(관리주체 자부담률 10% 이상)

□ 그간 추진경위

- 지원대상 선정 단지 통보(시 → 자치구) '24. 4. 8.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수합(자치구 → 시) '24. 4. 15.
- 시비보조금 교부 및 교부결정 통지(시 → 자치구) '24. 4. 24.

□ 사업 진행현황

- 사업추진 체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자치구 : 선정단지에 시비보조금 교부, 사업 지도·감독, 집행잔액 반납 등
- 사업진행 단계별 현황

(‘24.5.27.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사업준비중	사업진행중	사업완료
100	36	60	4

○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진행 현황

(‘24.5.27. 기준,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선정단지	사업진행 단계			사업완료	
			사전준비	사업진행 중	사업완료	정산보고	잔액반납
	합 계	100	36	60	4		
1	종로구	5	5				
2	중구						
3	용산구	1		1			
4	성동구	1	1		1		
5	광진구	4	1	2			
6	동대문구	2		2	1		
7	중랑구	10	3	6			
8	성북구	11	11				
9	강북구	1		1			
10	도봉구	10	7	3			
11	노원구	9		9	2		
12	은평구	2					
13	서대문구	2	1	1			
14	마포구	2		2			
15	양천구	4		4			
16	강서구	5	2	3			
17	구로구	1		1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8	1	7			
21	관악구	2	2				
22	서초구	2	1	1			
23	강남구	4		4			
24	송파구	10		10			
25	강동구	4	1	3			

*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